

2020년도

삼성중공업(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I. 지배구조 개요	2
II. 현황	3
1. 기업지배구조 정책.....	3
2. 주 주	5
(1) 주주의 권리	5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3
3. 이사회.....	20
(3) 이사회 기능	20
(4) 이사회 구성.....	28
(5) 사외이사의 책임.....	38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43
(7) 이사회 운영.....	45
(8) 이사회 내 위원회	50
4. 감사기구	56
(9) 내부감사기구	56
(10) 외부감사인.....	66
5. 기타	70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72
별첨 목록	73

지배구조 개요

- ▶ 기업 명 : 삼성중공업(주)
- ▶ 작성 담당자 : (정) 이승훈 파트장 자금기획
(부) 김혜림 프 로 자금기획
- ▶ 작성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 ▶ 기업 개요

최대주주등	삼성전자 외 8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¹⁾	21.87%
		소액주주 지분율 ²⁾	66.82%
업종	비금융	주요 제품	선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여부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미해당
기업집단명	삼성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0년	2019년	2018년
연결 매출액	68,603	73,497	52,651
연결 영업이익	(10,541)	(6,166)	(4,093)
연결 계속사업이익	(14,750)	(11,392)	(4,976)
연결 당기순이익	(14,927)	(13,154)	(3,882)
연결 자산총액	129,222	136,001	142,829
별도 자산총액	126,804	132,595	136,691

1)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2) 최근 사업연도 말일 기준

I. 현황

1. 기업지배구조 정책

당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주주·투자자·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지배구조의 건전성, 투명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당사만의 지배구조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당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현재 이사회 멤버 7인 중 사외이사는 4인으로 과반수 상회)

또한,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당사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사회 구성,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의결사항 등 당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관련한 정보를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에 제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조선해양 산업은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수의 경쟁자간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일어나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경영 여건 하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해양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학계, 정부정책, 금융,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산하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각 위원회로 위임하여 지배구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사의 업무 진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원간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기·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간의 원활한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 효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당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부터 이해관계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사회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기능을 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는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관계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3분의 2 이상 보다 더욱 엄격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가 독립적인 관점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자율적인 경영의사결정이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기반이 된다는 판단 아래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더 나은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http://www.samsungshi.com/Kor/Invest/mng_stockholder.aspx
- 사업보고서 : <http://dart.fss.or.kr>

2. 주 주

(핵심원칙 1) 주주의 권리

-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

당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일 약 3~4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보를 진행하여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주주총회의 개최 지역은 매년 본점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에 전자공시하고,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당초 2021년 2월 24일에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으나, 2021년 3월 8일 유럽 시추선사와의 중재에서 당사가 패소함에 따라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경영사항의 재무제표 반영을 위하여 2021년 3월 9일 정정공시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1-1]

구분	2020 년도 정기주주총회	2019 년도 정기주주총회	2018 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1 년 02 월 24 일	2020 년 02 월 21 일	2019 년 02 월 22 일
소집공고일	2021 년 02 월 24 일	2020 년 02 월 21 일	2019 년 02 월 22 일
주주총회개최일	2021 년 03 월 19 일(금)	2020 년 03 월 20 일(금)	2019 년 03 월 22 일(금)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23 일	28 일	28 일
개최장소/지역	삼성중공업 R&D 센터/판교	삼성중공업 R&D 센터/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판교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 여부 및 방법	-	-	-
세부	이사회구성원 출석 여부	7명 중 3명 출석	7명 중 4명 출석
		7명 중 3명 출석	

구분		2020 년도 정기주주총회	2019 년도 정기주주총회	2018 년도 정기주주총회
사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여부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주요 발언 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1) 발언주주 : 7인 (개인주주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재고드릴십의 제 7 광구 투입의사 여부 · 장기화된 실적 하락에 대한 대책 질의	1) 발언주주 : 9인 (개인주주 9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현대-대우 합병관련 질의 ·자사주 소각 관련 질의 ·중국 조선소와 기술 격차 관련 질의 등

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하였는가

당사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2주 전보다 다소 여유롭게 약 3~4주 전에 주주총회 개최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의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서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국인 주주 대부분이 해외투자기관, 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로서 국내에 상임 대리인을 두고 있으며, 상임 대리인 또는 의결권 자문회사를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 및 의결권 행사 자문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1년 3월 19일에 진행된 제 47기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 사전 위임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의 주주총회 참여율은 52%(350/679)였고, 국내 기관 투자자의 참여율은 22%(90/416)였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서가 없이도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당사의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했는지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1-2-1]

구분	2020 년 정기주주총회	2019 년 정기주주총회	2018 년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1.03.26	2020.03.13	2019.03.22
	2021.03.30	2020.03.20	2019.03.27
	2021.03.31	2020.03.26	2019.03.28
		2020.03.27	2019.03.29
정기주주총회일	2021.03.19	2020.03.20	2019.03.22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해당	미해당	미해당

구분	2020년 정기주주총회	2019년 정기주주총회	2018년 정기주주총회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아니오	아니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예	예

주주의 간접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는 서면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제 47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사전 전자투표 및 대리인 참석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일 당일 주총에 직접 참석한 주주는 총 1,218명으로 참석 주식수의 2.52%였으나, 사전 위임을 통해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주주는 참석 주식수의 97.48%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하여 주주총회 소집공고시에 참고서류를 함께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위임장 양식을 동봉하는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당사의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정기	제 46 기 주주총회					2020. 03. 20
안건	결의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①) ¹⁾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²⁾	찬성 주식수(B) (비율, %) ³⁾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⁴⁾
제 1 호 의안	보통	제 46 기('19.1.1~'19.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83,980,073	293,670,539	274,807,378 (93.6%)
						18,863,161 (6.4%)
제 2 호 의안	보통	조현욱(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583,980,073	293,670,539	293,670,539 (100%)
						- (-)
제 3 호 의안	보통	최강식(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458,143,403	167,833,869	163,330,391 (97.3%)
						4,503,478 (2.7%)
제 4 호 의안	보통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583,980,073	293,670,539	289,398,983 (98.5%)
						4,271,556 (1.5%)

정기		제 47 기 주주총회				2021. 03. 19	
안건	결의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㉑) ¹⁾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A) ²⁾	찬성	
						주식수(B)(비율, %) ³⁾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⁴⁾
제 1 호 의안		보통	제 46 기('19.1.1~'19.1 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584,796,052	258,676,824	239,453,409 (92.6%) 19,223,415 (7.4%)
2 호 의 안	제 2-1 호 의안	보통	정진택(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584,796,052	258,676,824	254,591,596 (98.4%) 4,085,228 (1.6%)
	제 2-2 호 의안	보통	윤종현(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결	584,796,052	258,676,824	254,455,471 (98.4%) 4,221,353 (1.6%)
	제 2-3 호 의안	보통	이기권(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584,796,052	258,676,824	208,195,618 (80.5%) 50,481,206 (19.5%)
제 3 호 의안		특별	이기권(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결	476,947,442	150,828,214	125,580,149 (83.3%) 25,248,065 (16.7%)
제 4 호 의안		특별	최강식(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결	476,947,442	150,828,214	146,540,526 (97.2%) 4,287,688 (2.8%)
제 5 호 의안		보통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584,796,052	258,676,824	255,399,797 (98.7%) 3,277,027 (1.3%)

1) 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기재

2) 주식수(A) = 주식수(B) + 주식수 (C)

3) 찬성 주식수 비율(%) = (B/A) × 100

4) 반대·기권 등 주식수 비율(%) = (C/A) × 100

나.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가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원활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초 결산 일정 및 이사진의 일정을 조율하여 주주총회 날짜를 조기에 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부 장소 대관 등을 진행하고 주주총회 개최 약 4주 전에 관련 정보 및 안건 내용 등을 주주들에게 공고합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20일 및 2019년 3월 22일에 진행된 제 46기와 제 45기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2021년 3월 19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의 경우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주주께서 직

.간접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주주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사업년도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님들의 의결권 행사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낮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수주주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여를 바탕으로 대주주 중심의 주주총회가 아니라 대다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주총회가 되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번 2021년 3월 19일에 개최한 제 47기 주주총회의 경우 전자 위임장 및 전자투표를 통해 총 1,183명의 주주가 6,408,393표의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총 참여 주주의 68%, 총 참석 주식수의 2% 수준입니다. 이밖에도 당사는 주주의 간접적 참여를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참여는 236,003,045주로 총 참여 주식 258,676,824주의 91.23% 수준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면투표의 경우, 30만명이 넘는 당사의 주주 수를 고려할 때 제도 운영상의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현재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면투표 추가 도입에 따른 효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 전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IR부서에서 주주의 주주제안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준법지원팀에서 해당 제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부담당부서의 검토 후, 주주의 제안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이사회 보고, ②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 ③주주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의 기회 부여, ④표결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었습니다.

동일 기간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접수된 공개서한 내역으로는 2020년 10월 14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사의 주주서한이 한 통 있습니다. 본 서한을 통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인지하고 향후 사업전략과 재무관리에 이를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참여,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협의체(TCFD) 권고안 준수 및 녹색경제활동 분류에 따른 정보공시를 제안하였습니다.

당사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저탄소 친환경 선박 기술 및 차세대 연료 기술 개발,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안전 투자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리스크 및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표 1-3-1]

제안 일자	제안 주체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상황	가결여부	찬성율(%)	반대율(%)
-	-	-	-	-	-	-

[표 1-3-2]

발송 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회신 주요 내용
2020-10-14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기후 관련 정보공시 참여 요구	-	-

나.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당사의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용이한 상황은 아닙니다. 향후에는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주제안권 행사의 절차 및 주주제안 의안 처리 절차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완비될 때에 이를 당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 전반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이 이뤄지는 경우,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4주전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주총 승인 당일 '현금·현물 배당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합니다.

당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으며, 해당기간 내 평균 배당성향은

18%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 및 저유가 영향으로 업황 부진에 따른 매출 하락, 영업적자 지속 등의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2015년 이후로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경영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배당을 포함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가

COVID 19 팬데믹의 장기화 및 그로 인한 2020년 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당사의 경영정상화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주주여러분께 안내드리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차후 경영상황이 개선되고 지속적 수익을 확보하게 된다면, 과거의 배당성향인 18%수준에서 국내외 유사업종의 평균수준으로 배당성향을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이 마련되는 때에 주주여러분께 이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

최근 3개 사업연도동안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표 1-5-1]

사업연도	결산월	주식종류	주식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1)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2)	배당성향 3)	
							연결기준	개별기준
2020 년도	12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2019 년도	12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2018 년도	12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1) 사업연도별 지급액 총액
- 2) 배당금총액/연결 or 개별 당기순이익
- 3)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나.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가

당사는 삼성경영원칙 원칙에서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추구를 표명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원칙을 통해서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저조한 시황 환경하에서도 적정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근원적 경쟁력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대한 조기에 배당가능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배당을 실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①)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식 발행 정보 전반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630,114,845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하여 800,000,000주 이고 그 중 우선주는 최대 60,000,000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 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및 기명식 우선주의 현황은 아래 표 2-1-1과 같습니다.

[표 2-1-1]

구 분		발행가능주식수(주) ¹⁾	발행주식수(주) ²⁾	비고
보통주		740,000,000	630,000,000	-
종류주	우선주	60,000,000	114,845	의결권 부활한 우선주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당사의 종류주는 우선주 1종으로 발행시에는 의결권이 없었으나, 배당 미지급을 사유로 2016년 8월 임시 주주총회부터 의결권이 부활되었습니다. 해당 우선주의 의결권은 정관 제8조의 8항에 의거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상법 제435조 및 동법 제4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주주총회의 요건에 해당사항이 없어 종류주주총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종류주주총회 실시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가

당사는 현재 의결권이 부활한 우선주를 포함하여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1주당 1표의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자사주 25,964,429주는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주주와의 의사소통

당사는 주주들이 적시에 충분한 기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매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1월, 4월, 7월, 10월에 경영실적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 증권사 Analyst,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 대면 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55회의 IR(Investor Relation)행사를 연중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IR행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 2-1-2과 같습니다.

[표 2-1-2]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0.01.07	국내 증권사 Analyst	내방 대면 회의(One-on-One)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1.07	국내 증권사 Analyst	내방 대면 회의(One-on-One)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1.09	외국계 증권사 Analyst	내방 대면 회의(One-on-One)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1.10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1.10	국내 증권사 Analyst	내방 대면 회의(One-on-One)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1.13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2.03	국내/외국계 증권사 Analyst,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컨퍼런스콜	2019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0.02.04~ 2020.02.06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방문 대면 회의(One-on-One)	2019년 4분기 경영실적,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2.11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3.16	국내 기관 투자자	내방 대면 회의(One-on-One)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3.27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3.27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4.06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4.07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4.27	국내/외국계 증권사 Analyst,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컨퍼런스콜	2020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0.05.27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0.06.09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Q&A	자료 활용
2020.06.09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0.06.16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0.07.31	국내/외국계 증권사 Analyst,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컨퍼런스콜	2020년 2분기 경영실적 설명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0.09.09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0.09.28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0.09.28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0.10.08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0.10.30	국내/외국계 증권사 Analyst,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컨퍼런스콜	2020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0.11.16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0.11.25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0.12.01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1.06	외국계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1.01.06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1.02.02	국내/외국계 증권사 Analyst,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컨퍼런스콜	2020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1.03.22	국내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1.03.23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4.06	외국계 증권사 Analyst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별도 자료 없이 진행
2021.05.04	국내/외국계 증권사 Analyst, 국내외 기관 투자자 등	컨퍼런스콜	2021년 1분기 실적 및 연간전망 등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5.10	국내 신용평가사	내방 대면 회의(One-on-One)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5.11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5.11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5.11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5.11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5.11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2021.05.12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IR 자료 활용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1.05.12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3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3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3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4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4	국내 신용평가사	내방 대면 회의(One-on-One)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4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4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7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18	국내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24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25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2021.05.25	해외 기관 투자자	컨퍼런스콜	주요 경영현안 및 전망 Q&A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IR 자료 활용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영문 홈페이지 상에 IR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와 회사 대표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영문 홈페이지 운영, 컨퍼런스콜, 전화응대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별도의 영문 공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영문 공시 내역은 아래 표 2-1-3과 같습니다.

[표 2-1-3]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	-	-

당사는 주주의 정보 불균형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아래 표 2-1-4와 같이 총 7회의 공정공시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내역은 아래 표 2-1-5와 같습니다.

[표 2-1-4]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0.02.03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2020 년도 매출액 및 수주목표 공시
2020.04.27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0 년도 1 분기 잠정실적 공시
2020.07.31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0 년도 2 분기 잠정실적 공시
2020.10.30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0 년도 3 분기 잠정실적 공시
2021.05.03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 년도 1 분기 잠정실적 공시
2021.05.03	[기재정정]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2021 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수주목표 공시
2021.05.03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1 년도 유상증자 추진 계획 발표

[표 2-1-5]

불성실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라.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당사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무성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추가정보 및 IR자료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분기별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공시 진행 및 경영실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당사의 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질의에 응대하기 위해 IR 담당부서의 이메일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IR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년 2019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전화 응대 업무에 대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는 시점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별도로 명기하고 있지는 않으나 거래소 공정공시 및 여타의 공시 서식 내 연락처 란에 IR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번호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전화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공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당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문 보도자료의 형태로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영문 보도자료 : http://www.samsungshi.com/eng/pr/news_list.aspx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장치(정책)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별첨 2. 이사회 규정 참조) 제12조 제3항 제5호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제4항 제4호에서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의 경우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 기재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전자공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위하여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별첨 3.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참조)에 따라 동 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거래항목인 50억원 이상 거래는 사전에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50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 간사가 중요한 거래라고 판단하는 거래에 대해 사전 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언제든지 간사에게 내부거래 세부현황 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령 및 회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2-1] 채무보증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천CNY, 천USD, 천MYR)

회사명	관계	여신기관	통화	담보 및 보증금액(한도)				실행액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삼성중공업	계열회사	우리은행 외	CNY	298,756	-	7,975	290,781	140,000	주1)

회사명	관계	여신기관	통화	담보 및 보증금액(한도)				실행액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영파)유한공사			USD	103,524	-	103,524	-	-	
삼성중공업 (영성)유한공사	계열회사	하나은행 외	CNY	433,885	-	153,753	280,132	140,000	주2)
			USD	59,000	21,000	-	80,000	70,000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	계열회사	SC 은행 외	USD	142,356	-	71,178	71,178	-	주3)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계열회사	HSBC	MYR	12,218	-	-	12,218	-	주4)
계			CNY	732,641	-	161,728	570,913	280,000	
			USD	304,880	21,000	174,702	151,178	70,000	
			MYR	12,218	-	-	12,218	-	

※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회사는 계열회사인

주1) 삼성중공업(영파)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CNY 291백만, 실행 CNY 140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2) 삼성중공업(영성)유한공사에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한도 USD 70백만, CNY 280백만, 실행 USD 70백만, CNY 140백만), 선물환 한도 약정관련 채무보증(한도 USD 10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3) Samsung Heavy Industries Nigeria Ltd에 이행보증(한도USD 71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4)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에 이행보증(한도 MYR 12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2-2-2] 대여 내역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당기		전기	
	대여	회수	대여	회수
Samsung Heavy Industries (M) SDN.BHD	2,449	2,449	-	-

[표 2-2-3]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성명(법인명)	관계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비고	
		출자지분 종류	거래내역				
			기초	증가	감소		기말
ZVEZDA-Samsung Heavy Industries LLC	공동회사	주식	-	230	-	230	-

3. 이사회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이사의회의 기능

당사는 이사의회의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 수행을 공고히 하기 위해 관련 권한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0조 제1항에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안을 제외한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이사의회의 심의 결정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의회의 경영감독에 대한 권한은 이사회 규정 제3조 제2항을 통해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권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3조 제3항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담당 이사에 대해 관련자료 제출, 조사 및 설명 요구 권한을 두고 있으며, 제3조 제4항에서는 해당 사안 집행 중지 또는 변경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2조에서는 이사회 부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 3-1-1]

항	호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주총의장의 결정 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경영계획,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승인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항	호
	3.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4.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6. 건별 1억원 이상의 기부금 등 대외 후원금
④ 이사, 이사회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이사의 직위, 직무의 위촉 및 해촉 3. 고문 및 대우임원의 선임 4.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5. 이사 경업, 동업타사 임원 겸임의 승인 6. 이사회 의장의 결정 7.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⑤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의 개폐 (2000.5.10 개정)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당사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자 법상 의무화된 심의·의결사항 이외에 '건별 1억원 이상의 기부금 등 대외 후원금에 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부금 또는 대외 후원금에 대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정관 제30조의3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1항을 통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게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에게 당해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기능과 경영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권한 중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으로는 사채의 발행이 있습니다. 당사는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사채의 발행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한 재무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 30조의2 제2항 및 이사회규정 제13조2 제3항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위원회에 지점·공장·사무소 및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10억 이상에서 100억 미만의 내부거래 중 자산·자본·유가증권의 거래, 경영계획의 승인, 주식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대행업무의 결정 등의 사항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권한 중에서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을 결정하는 권한의 경우 이사의 보수의 한도는 보상위원회로, 사외이사의 추천은 사외이사추천위원회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권한 중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 일부 위임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의 효과적 수행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갖춘 경영판단의 최상위 주체임을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권한의 직접 수행과 적절한 위임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판단을 통하여 회사를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당사는 대외적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사팀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인 '핵심 Post Succession Plan'을 통해 안정적인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대상자의 역량을 기반으로 선임 즉시 활동이 가능한 'Ready Now' 그룹과 향후 몇 년 이내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Ready Later' 그룹으로 구분하며 매년 각 그룹의 후보군을 갱신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선정의 상세 기준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최고 경영자로서 필요한 리더십,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 외에도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입, 승진 임원 후보군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양성과정 교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임원 승진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리더과정, 경영자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고위 경영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임원 및 최고/고위 경영자 후보자가 단계적으로 회사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차세대리더과정을 통해 6명의 임원 후보자를, 고위경영자양성과정을 통해 1명의 최고/고위 경영자 후보를 양성하였으며, 2021년 차세대리더과정은 후보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고위경영자양성과정은 현재 입과 후보자 선정 작업중으로 2021년 6월 이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세대 리더과정 및 최고/고위 경영자 후보 과정에서는 경영전략, 마케팅, 재무회계 등 경영학 전반에 대한 사항과 조직을 이끌어 나감에 있어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과정은 4개월 과정으로 집합교육(4회, 4박 5일) 및 온라인 학습(9주)으로 운영되며, 교육이 종료된 이후 입과 대상자의 교육과정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집니다. 최고/고위 경영자 후보 과정은 6개월 과정으로 집합교육(4회, 4박 5일)과 온라인 학습으로 운영됩니다. 차세대 리더과정 및 최고/고위 경영자 후보 과정은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구성, 운영, 평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삼성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부재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Ready Now' 그룹의 후보군을 대상으로 내부평가를 통해 후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인선하고,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의결 및 이사회 업무 위촉을 통해 후임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통하여 당사는 비상상황 발생시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리스크관리 정책

당사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장기간에 걸쳐 건조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입찰 및 수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에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조직인 RM(Risk Management)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RM 팀은 견적, 설계, 생산 등 업무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리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준, 프로세스, Tool & Template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선박 및 해양플랜트 공사의 전체과정에서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고 해당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RM팀은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점검을 통해 리스크가 심화될 시에는 경영진에게 이를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최근 공정경쟁, 부패방지, 환경보호 등과 관련한 기업 규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제반 법규 준수에 기초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2010년부터 준법경영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제정한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임직원들이 준법경영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준법경영프로세스(그림 3-2-1 참조)를 정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당사 사업영역과 관련된 법률 위반 리스크 사전 파악, 규정 안내, 세부지침 및 행동규범 등 매뉴얼을 임직원에게 제공,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지원의 과정이 선순환되며 각 분야의 준법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의 적용 및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경영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당사의 조직 및 사업에서 준법경영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이를 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림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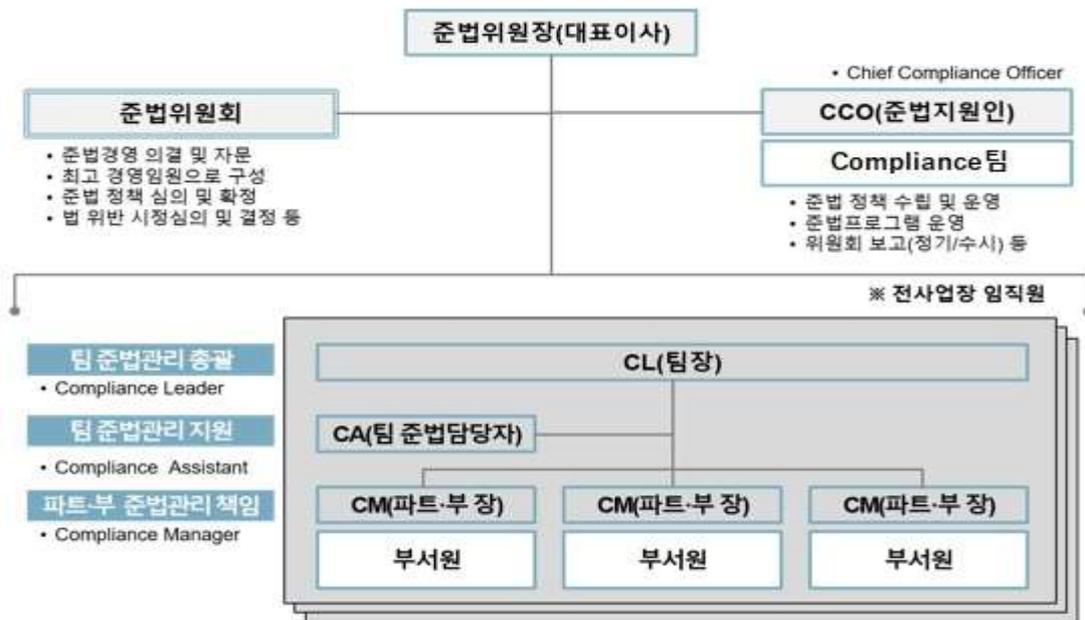


준법경영프로세스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는 준법위원회, 준법지원 전담조직(Compliance팀) 및 각 단위조직 준법실천자별로 역할을 정립한 준법경영프로그램 실행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준법통제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위원회는 준법경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며, 반기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팀은 준법지원인을 주축으로 준법위원회를 보좌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준법경영의 가치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위조직의 준법경영을 책임·관장하는 준법실천자는 준법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Compliance Leader(팀장)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준법관리를 책임지는 Compliance Manager(부서장), 준법업무 실행 및 보좌를 담당하는 Compliance Assistant(실무담당)로 구성됩니다. 준법실천자의 역할을 준법프로그램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경영프로그램 실행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림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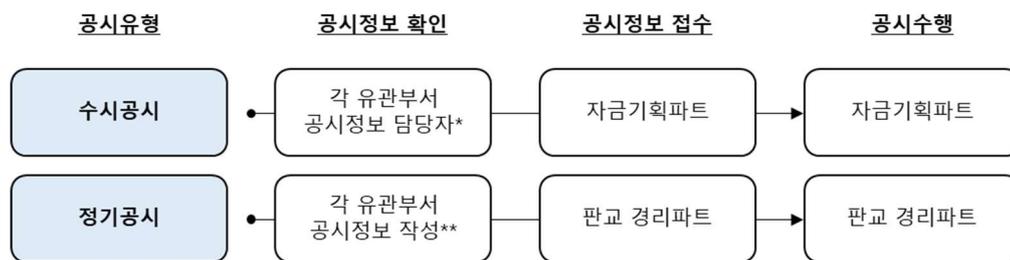
이밖에도, 2019년에는 부패방지법 준수규정을 개정하며 이익충돌 및 인수합병 조항을 신설하고, 준법실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서약, 준법 리스크 분석, 준법 설문을 확대 실시하여 필요시 준법실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법 리스크를 관리하고 준법경영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매년 부패방지법 준수규정, 세부지침, 매뉴얼 등 준법경영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외부 진단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시정보 관리규정은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정보 및 의사소통, 공시위험의 평가와 관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기타 공시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경영지원실 재무팀 소속으로 수시공시 등 공시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자금기획파트와 정기공시를 수행하는 판교경리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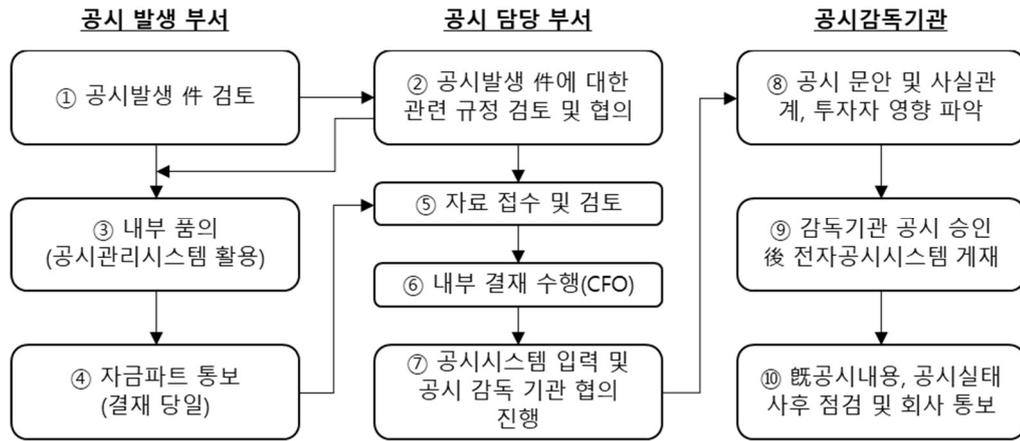
* SDMS(Samsung Disclosure Management System) 시스템 활용

** SHI 내부통제평가시스템 활용

최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고, 회사 내의 다양한 부서에서 공시 이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공시 수행 부서에 전사의 정보를 집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SDMS(Samsung Disclosure Management System) 시스템과 SHI 내부통제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SDMS 시스템은 수시공시 이슈의 발생부터 전자 공시 게재까지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공시 발생 부서는 SDMS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간단위로 발생 가능한 공시 항목의 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임원 결재를 득하여 공시 수행 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합니다. 해당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시 담당 부서는 공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실제 공시를 수행합니다. 현재 당사는 16개 부서를 공시 발생 부서로 지정하고 각 부서별 담당자가 주요 공시 항목에 대하여 매주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업무 프로세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3-2-4]



이 밖에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를 위한 SHI 내부통제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2019년 평가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상근 이사로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확인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위원회와 경영진 평가 및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검토 결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외부적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을 득하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31일 기준).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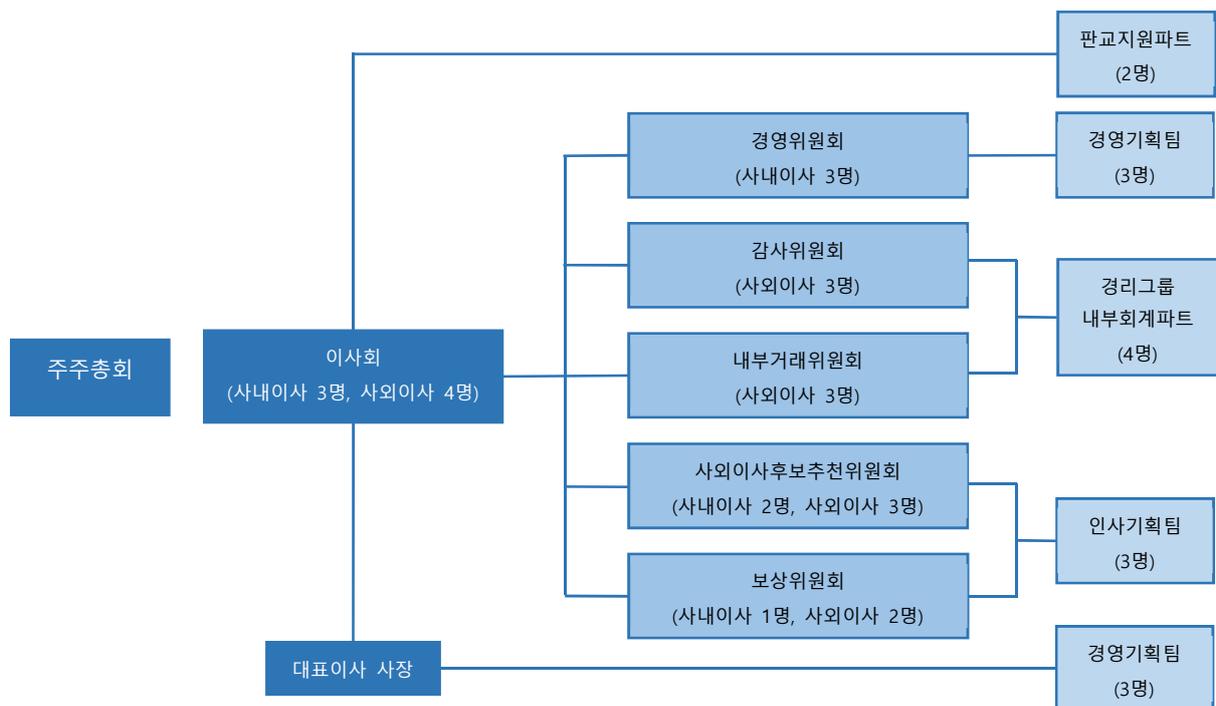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

당사의 정관 제25조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8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는 4인(57.1%)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3인 이상으로 과반수가 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내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사회 관련 조직도 및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표 4-1-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직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사내이사	정진택	남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사장	2021.03.19	2024년 정기주총일	조직, 인사	
사내이사	배진한	남	경영지원실장	2019.03.22	2022년 정기주총일	경영지원 총괄	
사내이사	윤종현	남	조선소장	2021.03.19	2024년 정기주총일	조선해양사업 총괄	
사외이사	최강식	남	감사위원 사외이사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보상위원	2018.03.22	2024년 정기주총일	교수(경제학)	現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외이사	남기섭	남	감사위원 사외이사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보상위원	2019.03.22	2022년 정기주총일	금융	前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사외이사	조현욱	여	사외이사추천위원	2020.03.20	2023년 정기주총일	법률	現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사외이사	이기권	남	감사위원 내부거래위원	2021.03.19	2024년 정기주총일	노사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1) 재선임의 경우 최초 선임일 기재

[표 4-1-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역할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주요역할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성별	겸임		
경영위원회 (총 3인) (A)	위원장	사내이사	정진택	남	C	회사 주요 경영사항 의결	-
	위원	사내이사	배진한	남	C,E		
	위원	사내이사	윤종현	남	-		
감사위원회 (총 3인) (B)	위원장	사외이사	최강식	남	C,D,E	내부통제, 이사 및 경영진 업무감독 등	-
	위원	사외이사	남기섭	남	C,D,E		
	위원	사외이사	이기권	남	D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총 5인) (C)	위원장	사내이사	정진택	남	A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후보 추천	-
	위원	사내이사	배진한	남	A,E		
	위원	사외이사	최강식	남	B,D,E		
	위원	사외이사	남기섭	남	B,D,E		
	위원	사외이사	조현욱	여	-		
내부거래위원회 (총 3인) (D)	위원장	사외이사	최강식	남	B,C,E	계열사간 내부거래 심의	-
	위원	사외이사	남기섭	남	B,C,E		
	위원	사외이사	이기권	남	B,C		
보상위원회 (총 3인) (E)	위원장	사외이사	남기섭	남	B,C,D	경영진 성과보상제도 운영	-
	위원	사외이사	최강식	남	B,C,D		
	위원	사내이사	배진한	남	A,C		

사외이사 4인 중 최강식 이사는 2018년 3월 22일에 최초 선임되어 1회 재선임 되었으며, 나머지 남기섭 이사, 조현욱 이사, 윤종현 이사는 모두 최초 선임되어 당사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조선업 위기 속에서 삼성중공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그 집행을 위하여 현재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당사는 정관에서 최소 3인이상 최대 8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최소 인원을 3인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 38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이사회 총원을 반영한 것이며, (2) 최대 8인으로 제한한 것은 이사 상호간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했을 때 8인 초과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사 사내이사 3명은 대표이사, 경영지원실장, 조선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경제, 금융, 법률, 노사관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당사의 이사들은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별로 상호간의 토론을 통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빠른 경영상의 판단이 필요한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고, 별도의 선임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로서 사내·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독단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사외이사 중에서 가장 먼저 선임된 사외이사로 하여금 선임사외이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

당사는 이사회(사내이사) 및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사외이사)에서 주요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난 후 주주총회의결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정관 제25조의2 제2항에서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계, 재계, 학계 등 사회 각계의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외이사로서 법적인 결격 요건이 없는 인사로 후보 Pool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 정책, 경제, 법률 등 당사의 기업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유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0일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여성인 조현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2-1]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재직여부
사내이사	정해규	2018.01.26	2021년 정기주총일	2019.03.22	사임	퇴직
	남준우	2018.01.26	2021년 정기주총일	2021.03.19	임기만료	퇴직
	김준철	2018.01.26	2021년 정기주총일	2021.03.19	임기만료	퇴직
	배진한	2019.03.22	2022년 정기주총일	2019.03.22	신규선임	재직
	정진택	2021.03.19	2024년 정기주총일	2021.03.19	신규선임	재직
	윤종현	2021.03.19	2024년 정기주총일	2021.03.19	신규선임	재직
사외이사	박봉흠 이사	2016.03.18	2019년 정기주총일	2019.03.22	임기만료	퇴직
	신종계 이사	2014.03.14	2020년 정기주총일	2020.03.20	임기만료	퇴직
	유재한 이사	2015.03.13	2021년 정기주총일	2021.03.19	임기만료	퇴직
	최강식 이사	2018.03.22	2024년 정기주총일	2021.03.19	재선임	재직
	남기섭 이사	2019.03.22	2022년 정기주총일	2019.03.22	신규선임	재직
	조현욱 이사	2020.03.20	2023년 정기주총일	2020.03.20	신규선임	재직
	이기권 이사	2021.03.19	2024년 정기주총일	2021.03.19	신규선임	재직

나.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정진택 이사는 당사의 영업팀장, RM(Risk Management)팀장, 기술개발본부장 및 조선소장을 역임하며 영업/설계/생산 등 조선소 전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진한 이사는 삼성에버랜드 경영지원팀장, 삼성물산 리조트·건설부문 경영지원 팀장을 역임한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 윤종현 이사는 당사에서 30여년 동안 선박/해양플랜트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전략 선종 표준 사양 개발 및 시장 선도형 제품 개발에 일조해 온 설계/기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과 경영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에서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강식 이사는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경제학계의 전문가이며, 남기섭 이사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석부행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이고 조현욱 이사는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입니다. 이기권 이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로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성별, 경력, 전문지식에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해 더욱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회사 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여부

당사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된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경영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 제26조 제1항 및 2항을 통해 주주총회결의로써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 기준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사내이사는 별도의 후보자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핵심 Post Succession Plan'을 통하여 'Ready Now'와 'Ready Later'로 후보군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상황, 경력 사항, 대내외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독립성 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 정관 제30조의6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30조의6 제2항 및 이사회규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합니다. 현재 총 5명의 위원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로(3명, 60%)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원회의 안건, 경과, 결과와 함께 위원회 의사에 반대한 위원과 그 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 후보 관련 정보의 주주 사전 제공

당사는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판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공고를 통해 사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는 상세 이력, 독립성(이해관계) 관련사항, 현재 직업(겸직 등) 등 합리적인 판단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합니다.

또한, 재선임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및 각 이사회 위원회에 대한 출석률, 의안별 찬성·반대 여부 등 당사의 사외이사로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보 재선임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3-1]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0.02.21 (주총 28 일전)	2020.03.20	사외	조현욱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후보 추천 사유 3.독립성(이해관계) 관련 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4.주된 직업(겸직 등)	이사 후보에 대한 내용은 주주총회결의/주주총회 공고를 통하여 안내

2021.02.24 (주총 23 일전)	2021.03.19	사내	정진택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후보 추천 사유 3.독립성(이해관계) 관련 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4.주된 직업(겸직 等)	상동
			윤종현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후보 추천 사유 3.독립성(이해관계) 관련 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4.주된 직업(겸직 等)	
		사외	최강식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후보 추천 사유 3.독립성(이해관계) 관련 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4.주된 직업(겸직 等)	
			이기권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2.후보 추천 사유 3.독립성(이해관계) 관련 사항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법인과의 거래내역 4.주된 직업(겸직 等)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당사는 이사 선임 시 복수 후보 사이에서 득표수로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로서 선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 선임 구조의 성격을 고려하여 당사는 정관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 선임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참석 이외에도 대리인 참석, 위임장 서면회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등의 방법을 안내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외이사 선임에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라.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집중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내이사 후보군 선정 및 관리와 사외이사 인력 Pool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후보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는 이사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독립성이 특히 중요한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회사 경영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고, 개별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전체 주주들의 경영 대리인으로서 이사선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

2021년 5월 31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총 46명으로 이 중 남성은 44명 여성은 등기이사 1명 미등기 이사 1명 총 2명입니다. 상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4-1]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정진택	남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사장
배진한	남	부사장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실장
윤종현	남	전무	등기임원	상근	조선소장
최강식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남기섭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조현욱	여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이기권	남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김윤근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법무지원실장
정호현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술개발본부장
임봉석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사지원실장
김동철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팀장
안평근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소부소장
강영규	남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사업본부장
오성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본부장
하성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품질경영팀장
정지창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구매지원팀장
유광복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기획팀장
박형윤	여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업 2 팀장
한국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평택 PJT 시공팀장
장해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선장설계팀장
허정윤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LNG 선공사팀장
이왕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사업담당
이동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해양연구소장
김경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외사업팀장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남궁금성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의장팀장
황호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공사팀장
방호열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인사관리팀장
조종범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Zvezda 생산 T/F 팀장
여동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기술영업팀장
김승희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조팀장
안강춘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전장설계팀장
배현근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시운전팀장
전제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나이지리아법인장
임종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구매 2 팀장
안영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조선기술영업팀장
김현조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선박해양연구소센터장
김종만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구매담당
김인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환경팀장
강인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파법인장
이상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해양 EM 팀장
스티븐훈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안전경영본부장
김진모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술기획팀장
윤기원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정보보호그룹장
이병현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생산기획팀장
김남길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영성법인장
선인규	남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구조설계팀장

나.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여부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 선임 시 평판, 보유 역량, 주요 실적, 성과 및 실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등기 임원의 경우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경영진으로의 책임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 과거의 성과 및 실책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여부

현재 당사의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 46명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그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및 도입한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관련규정, 운영현황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경영판단에 따른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④)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와의 이해관계 전반

당사는 정관 제25조의2 제3항을 통해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거래관계가 있는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 요건에 더해 공직자 대상 취업제한 기업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에게 체크리스트를 송부하여 해당 여부를 직접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 받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관계 등은 교차 점검하여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에 대한 규정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1년 5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등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5-1-1]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최강식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남기섭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조현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이기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나. 사외이사의 재직기간

당사는 정관 제27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선임 또는 교체를 실시합니다.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1회에 한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외이사의 재임기간은 오히려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에 당사에 6년 또는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장기재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으며, 2021년 5월 31일 기준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1-2]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시 그 사유
최강식	3년 2개월	해당 없음	3년 2개월	해당 없음
남기섭	2년 2개월	해당 없음	2년 2개월	해당 없음
조현욱	1년 2개월	해당 없음	1년 2개월	해당 없음
이기권	2개월	해당 없음	2개월	해당 없음

다.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지 여부와 그를 위한 기업의 노력

당사는 상기 기재한 것과 같이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선임 시에 이해관계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 시 후보자가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득하게 하고 만일 사외이사 선임 후에 중대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경영의사결정이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프로세스에서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 수행 전반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의 이익과 사외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사외이사 활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여 충실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하여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82조의4에 따라 회사의 영업상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정관 제34조에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이사의 경업을 금지하고,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도 이사로 선임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2-1]

성명 (감사위원)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최강식 (감사위원)	2018.03.22	2024년 정기주총일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	-	-	-
남기섭 (감사위원)	2019.03.22	2022년 정기주총일	-	-	-	-	-
이기권 (감사위원)	2021.03.19	2024년 정기주총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법인기업	사외이사	롯데글로벌로지스(주) 2개월	비상장
조현욱	2020.03.20	2023년 정기주총일	더조은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

나.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는가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 당시부터 경업 중임을 알고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의 경업을 금지하고 있고,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4명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총 3명입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한 검직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으며, 정기 이사회와 수시 이사회에 2020년 기준 100%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당사의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바탕으로 충실히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 직무 수행 지원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경비),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경비)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 등에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회사가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권한)을 통해 이사에 대한 관련 자료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여 직무 수행 중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직무수행 중 정보 또는 인적·물적자원이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이사회 지원 조직인 판교지원파트에 요청하면 해당 내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사외이사로부터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특별한 요청 사항이 부재하여 제공한 실적은 없으나 향후 제공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해당 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사회 전 사외이사에게 안건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통상 1주일 전에 안건을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기업의 경영목표, 전략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조직인 판교지원파트는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사외이사진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 취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현황, 주요 현안 등의 정보를 이사진에게 제공합니다. 이사회 개최 시에도 의결사항 이외의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경영상 긴급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사외이사진이 경영진과 수시로 접촉하여 관련 내용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경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에 대하여 사내/사외이사를 막론하고 모든 이사진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등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만의 이사회 내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외이사로부터 별도 회의에 대한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의 정기·임시 회의 개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5-3-1]

회차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 전체 사외이사	회의사항	비고
-	-	-	-	-	-

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조선해양 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7월 26일에 개최한 정기 이사회는 거제 조선소에서 개최하여 사외이사들이 당사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당사 거제 조선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제반 여건상 어려움으로 사외이사들의 생산현장 방문, 시찰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밖에도 당사 이사회 지원 조직을 통하여 사외이사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하여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와 달리 별도의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별도 회의의 개최 필요성이 강화되거나, 사외이사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당사는 매년 대표이사와 인사담당 임원의 책임하에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기 만료 시 재선임 또는 교체 판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위해 개별 사외이사의 활동 실적, 경영 기여도, 전문성 등의 정성 또는 정량 평가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중/하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의 판단은 위원회 활동 및 의안 심의 실적 등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 내역, 평가 기준표, 상세 평가 방법은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고 개별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결정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사회적 지위, 품위 및 물가를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등의 복리후생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의 보수가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가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사외이사 보수를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평가결과가 '상'인 사외이사에 한하여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평가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념상 당사의 규모 및 동종·유사업계의 보수수준을 고려했을 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내부적 논의를 거쳐 사외이사 평가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제도와 보수산정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④)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

당사는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 제8조 제2항을 통해 매 분기 1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명시하였으며, 분기 또는 연간 결산보고를 받는 1월, 4월, 7월, 10월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을 근거로 회사 경영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이사진의 이사회 참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을 통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10조 제1항에서는 이사회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를 통지하도록 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통상 이사회 소집 1주일 전에 안건을 통지하여 사전에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7-1-1]

회차	안건		가결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건통지일자	출석/정원
	구분	내용					
20년1차	결의	제4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0.02.03	2020.01.27	7/7
	결의	제46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결의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	가결				

회차	안전		가결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전통지일자	출석/정원
	구분	내용					
20년2차	결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가결	정기	2020.02.21	2020.02.14	7/7
	결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결의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가결				
	결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결				
	보고	준법지원활동 현황보고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20년3차	결의	제46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장소 변경의 건	가결	임시	2020.02.27	2020.02.24	6/7
20년4차	결의	제46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0.03.12	2020.03.05	7/7
20년5차	결의	이사보수한도 집행의 건	가결	정기	2020.03.20	2020.03.13	7/7
	결의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20년6차	결의	2020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0.04.27	2020.04.20	7/7
	결의	부동산 담보 제공의 건	가결				
20년7차	결의	2020년 상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0.07.31	2020.07.24	7/7
	결의	사채 발행 권한 대표이사 위임의 건	가결				
	결의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20년8차	결의	2020년 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0.10.30	2020.10.23	7/7
	결의	대외후원금(태안유류사고 지역공헌 사업) 지원의 건	가결				
20년9차	결의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 승인의 건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	가결	임시	2020.12.21	2020.12.14	7/7
	결의	계열회사와 대규모 상품-용역거래시 거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1년1차	결의	KCLING Tech(KLT)社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임시	2021.01.20	2021.01.13	7/7
21년2차	결의	제4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02.02	2021.01.26	7/7
	결의	제4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결의	전자투표제도 도입 결정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결의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회차	안전		가결여부	정기 /임시	개최 일자	안전통지일자	출석/정원
	구분	내용					
	결의	2021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가결				
21년3차	결의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가결	임시	2021.02.24	2021.02.17	6/7
	결의	제47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결의	보상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가결				
	보고	준법지원활동 현황보고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21년4차	결의	제47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가결	임시	2021.03.09	2021.03.02	6/7
	결의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21년5차	결의	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업무 위촉의 건	가결	임시	2021.03.19	2021.03.12	7/7
	결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주주총회/이사회 의장 순서 결정의 건	가결				
	결의	이사보수한도 집행의 건	가결				
	결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건	가결				
	결의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21년6차	결의	2021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정기	2021.05.04	2021.04.27	7/7
	결의	무상감자의 건	가결				
	결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가결				
	결의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의 건	가결				
	결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가결				

가.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가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진들에게 당사의 경영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정기 및 임시 이사회의 개최를 통하여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관리

당사는 정관 제33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 제1항에서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의 내용을 규정한 동조 제2항에서는 이사회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록은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의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나.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공개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별로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 개별이사의 출석내역

구분	회차	20년 1차	20년 2차	20년 3차	20년 4차	20년 5차	20년 6차	20년 7차	20년 8차	20년 9차	21년 1차	21년 2차	21년 3차	21년 4차	21년 5차	21년 6차	
	개최 일자	2020. 02.03	2020. 02.21	2020. 02.27	2020. 03.12	2020. 03.20	2020. 04.27	2020. 07.31	2020. 10.30	2020. 12.21	2021. 01.20	2021. 02.02	2021. 02.24	2021. 03.09	2021. 03.19	2021. 05.04	
사내	정진택	미해당	출석	출석													
	배진한	출석															
	윤종현	미해당	출석	출석													
	남준우	출석	미해당	미해당													
	김준철	출석	출석	불참	출석	불참	불참	미해당	미해당								
사외	최강식	출석															
	남기섭	출석															
	조현욱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이기권	미해당	출석	출석													
	유재한	출석	미해당	미해당													
	신중계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 미해당: 해당 이사회 개최 시 선임 전 또는 사임으로 재직 중이 아닌 경우

[표 7-2-2]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재직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2020	2019	2018
정진택	사내	2021.03.19 ~ 현재	-	-	-	-	-	-	-	-
배진한	사내	2019.03.22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윤종현	사내	2021.03.19 ~ 현재	-	-	-	-	-	-	-	-
남준우	사내	2018.01.26 ~ 2021.03.1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준철	사내	2018.01.26 ~ 2021.03.19	73	83	88	43	100	100	100	100
최강식	사외	2018.03.22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기섭	사외	2019.03.22 ~ 현재	100	100	100	-	100	100	100	-
조현욱	사외	2020.03.20 ~ 현재	100	100	-	-	80	80	-	-
이기권	사외	2021.03.19 ~ 현재	-	-	-	-	-	-	-	-
유재한	사외	2015.03.13 ~ 2021.03.19	96	100	88	100	100	100	100	100
신종계	사외	2014.03.14 ~ 2020.03.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재직 평균은 연도별 출석률/참석률에 대한 단순 평균값임

※※ 신종계 이사가 2020년 3월 20일 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조현욱 이사가 2020.3.20 일자로 신규 선임 되었으며, 남준우 이사, 김준철 이사, 유재한 이사가 2021년 3월 19일 주주총회에서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정진택 이사, 윤종현 이사, 이기권 이사가 신규선임 되고 최강식 이사가 재선임됨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및 구성 등은 세부원칙 4-①에서 기재하였으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관련 내용은 세부원칙 4-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가

당사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경영위원회(별첨 4.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참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감사위원회는 동조의 11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전문성 기반의 집중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별첨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참조) 제2조 제2항에 명시하여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규정(별첨 6. 보상위원회 규정 참조) 제3조 제1항에서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의 보상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점을 견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별첨 7.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참조) 제2조2에서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권고한 바처럼 감사위원회 3인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과반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보다 강화된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위원회는 현재 사내이사 1인이 포함되어 있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을 권고하는 기업지배모범규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정에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명문화

당사는 정관 제30조의 2 제1항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2 제1항에서 이사회 내에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근거는 정관 제30조의 3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명시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에서 업무범위, 권한, 부의사항, 구성 등 각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둬으로써 효율적인 위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결의사항 이사회 보고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주총 안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13조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각 이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위원회별 개최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률

[경영위원회]

[표 8-2-1]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회의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년 1차	2020.01.16	3/3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여신약정 체결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결의사항	영성법인 여신약정 관련 본사 지급보증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부동산 담보차입 실행의 건	가결
2020년 2차	2020.02.21	3/3	결의사항	우리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결의사항	영성법인 여신약정 관련 본사 지급보증 갱신의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결의사항	산업은행 외화지급보증 발급의 건	가결
			결의사항	NH 농협은행 여신약정의 건	가결
			결의사항	예금담보 차입 실행의 건	가결
2020년 3차	2020.03.19	2/3	결의사항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보대출에 대한 예금담보 제공의 건	가결
2020년 4차	2020.04.01	3/3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결의사항	신한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2020년 5차	2020.04.22	3/3	결의사항	산업은행 일반대 차입의 건	가결
			결의사항	하나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2020년 6차	2020.05.20	3/3	결의사항	신한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NH 농협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KB 국민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CA-CIB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Societe Generale 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KDB 산업은행 차입금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2020년 7차	2020.06.17	3/3	결의사항	IBK 기업은행 여신한도 증액 및 기간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경남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NH 투자증권 일반대출 만기 연장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2020년 8차	2020.08.26	3/3	결의사항	KB 국민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영성 법인 차입금 본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2020년 9차	2020.10.05	3/3	결의사항	산업은행 외화지급보증 발급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2020년 10차	2020.10.28	3/3	결의사항	러시아 법인 설립의 건	가결
2020년 11차	2020.11.25	3/3	결의사항	건설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SC 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영파법인 여신약정 관련 본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부동산 담보제공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결의사항	Arctic LNGC 계약 관련 외화지급보증 발급의 건	가결
2020년 12차	2020.12.21	3/3	결의사항	KDB 산업은행 차입금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하나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우리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결의사항	영성법인 여신약정 관련 본사 지급보증 갱신의 건	가결
2021년 1차	2021.01.20	3/3	결의사항	SC 은행 Pre-shipment 차입 약정의 건	가결
2021년 2차	2021.04.07	3/3	결의사항	신한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차입의 건	가결
2021년 3차	2021.04.20	3/3	결의사항	수출입은행 예금담보 제공의 건	가결
			결의사항	신한은행 여신한도 증액의 건	가결
			결의사항	하나은행 여신약정 갱신의 건	가결

[표 8-2-2] 최근 3개 사업년도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			
		개별 이사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내	남준우	100	100	100	100
사내	김준철	82	92	100	55
사내	배진한	100	100	100	-
사내	정해규	46	-	0	91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평균 출석률은 최근 3개년(2018~2020년)의 단순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년도 참석에 대한 사항은 평균값에 반영하지 않음.

2019년 3월 22일자로 정해규 위원이 사임하고 배진한 이사가 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2021년 3월 19일 남준우 위원과 김준철 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고 정진택 위원과 윤종현 위원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표 8-2-3]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회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년 1차	2020.02.21	5/5	결의사항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1년 1차	2021.02.24	5/5	결의사항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결의사항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표 8-2-4]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			
		개별 이사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내	남준우	100	100	100	100
사내	배진한	100	100	-	-
사내	정해규	50	-	0	100
사외	송인만	100	-	-	100
사외	신종계	100	100	100	100

구분	성명	출석률 (%)			
		개별 이사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유재한	100	100	100	100
사외	박봉흠	100	-	100	100
사외	최강식	100	100	-	-
사외	조현욱	-	-	-	-
사외	남기섭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평균 출석률은 최근 3개년도(2018~2020년)의 단순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년도 참석에 대한 사항은 평균값에 반영하지 않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신중계 위원과 유재한 위원의 임기만료로 조현욱 위원과 남기섭 위원이 재직 중입니다. 조현욱 위원은 2020년 3월 20일, 남기섭 위원은 2021년 3월 19일 각각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0년 2월에 개최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표 8-2-5]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회의 개최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년 1차	2020.07.31	3/3	결의사항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한도 사전 심의 - 삼성전자와의 상품용역거래의 건	가결
2020년 2차	2020.12.21	3/3	심의사항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상품·용역거래시 거래한도 사전 심의 - 2021년 삼성웰스토리와 상품·용역거래 한도 설정	-
			심의사항	계열회사와의 금융거래 사전심의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건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거래한도 승인의 건	-
2021년 1차	2021.03.09	3/3	심의사항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심의의 건(삼성전자)	-
2021년 2차	2021.05.04	3/3	결의사항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심의사항 유형의 안건은 가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결여부 란에 "-"으로 표시함.

[표 8-2-6]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			
		개별 이사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유재한	100%	100%	100%	100%
사외	최강식	100%	100%	100%	100%
사외	남기섭	100%	100%	100%	-
사외	박봉흠	100%	-	-	100%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평균 출석률은 최근 3개년도(2018~2020년)의

단순 평균값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년도 참석에 대한 사항은 평균값에 반영하지 않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재한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이기권 이사가 2021년 3월 19일 내부거래 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보상위원회]

[표 8-2-7]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 회의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2020년 1차	2020.02.21	3/3	결의사항	2020년 이사보수한도 사전 심의의 건	가결
2021년 1차	2021.02.24	3/3	결의사항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1년 이사보수한도 심의의 건	가결
			결의사항	2021년 이사 연봉 심의의 건	가결

[표 8-2-8] 최근 3개 사업년도별 개별 이사의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			
		개별 이사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내	배진한	100	100	-	-
사내	정해규	50	-	0	100
사외	최강식	-	-	-	-
사외	남기섭	-	-	-	-
사외	신중계	100	100	100	100
사외	송인만	100	-	-	100
사외	유재한	100	100	100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평균 출석률은 최근 3개년(2018~202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년도 참석에 대한 사항은 평균값에 반영하지 않음.

2021년 5월 31일 현재 신중계, 유재한 위원의 임기 만료로 남기섭 이사와, 최강식 이사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남기섭 위원의 경우 2020년 3월 20일, 최강식 위원은 2021년 3월 19일 각각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20년 2월에 개최된 보상위원회 회의에는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감사기구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

당사는 정관 제30조의5 제1항, 이사회 규정 제14조2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구성)에서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제25조의2 제2항에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구성)에 감사위원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구성)에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감사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에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상근감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근감사의 겸직의

허용 여부는 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당사는 감사위원 3인 중 3인을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재한 위원과 남기섭 위원은 각각 재정경제부와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회계·재무전문가로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합니다.

최강식 위원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인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회계·재무 전문가 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1]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장	사외이사	유재한	1955.03.15 서울대 경제학 학사 전)재정경제부 근무(~2007) 전)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2009) 전)기업은행 사외이사(2011~2014) 전)(주)이노션 사외이사 (2016~2019)	회계·재무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남기섭	1955.12.30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 석사 전)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2012) 전)한국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2015)	회계·재무전문가
위원	사외이사	최강식	1960.08.02 미국 예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전)우리은행 사외이사(2014~2016) 전)우리카드 사외이사/감사위원(2016~2018) 현)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2021)	회계·재무전문가

보고서 작성 기준일 이후 2021년 3월 19일 주주총회에서 유재한 위원과 최강식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이기권 사외이사가 신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최강식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강식 이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사외이사가 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분리선출되었습니다. 신규 선임된 이기권 감사위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위원	사외이사	이기권	1957.09.20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전)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2010~2012) 전)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2012~2014) 전)고용노동부 장관(2014~2017) 현)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2021)	2021년 3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선임

2021년 3월 19일 신규로 선임된 이기권 위원은 1981년 행정고등고시 25회 합격 후 노동부에서 다년간의 경력을 쌓았으며 고용노동부 차관, 장관직을 거쳐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중으로 고용/노동정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기권 위원이 공직자 출신으로써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 운영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서 감사위원의 직무와 권한을 제8조(책임)에서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감사위원회 조직 구성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기 운영규정에 따라서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외감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경 및 일반사항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규정 제11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계획을 이행한 것입니다. 당사는 2020년도에 감사위원회에 제공한 교육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감사위원회에 제공한 교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9-1-3]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실시주체	참석 감사위원	불참시 사유	주요 교육내용
2020.02.21	20 분	재무팀	신중계,유재한,남기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개정 설명
2020.07.31	20 분	재무팀 외부전문가	유재한/남기섭/최강식	-	내부회계관리 일반사항 설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의무 등)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위원이 이사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합니다.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 이사 및 집행임원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배경을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기업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감사위원은 그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에게 조사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경우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조사 보고가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3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비용, 자료, 관계자의 출석 등을 감사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장 감사부설기구를 통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현재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그 대신 재무팀 산하 내부회계파트와 감사팀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지원 조직 중 내부회계파트는 그룹장을 포함한 총 4인으로 감사위원회의 운영,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관리,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업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파트장을 포함한 총 2인으로 회계부정 관련 감사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지원 조직의 인력구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내부감사인력의 자격 등)에서 내부감사인력이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감사부설기구)에서 내부감사인력(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 감사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함을 명시하여 내부감사인력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직접 보고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부정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지원 조직의 상세한 구성 및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4]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	주요 역할 및 활동내역
내부회계 파트	4	그룹장 1명 간부 3명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감사위원회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감사위원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및 교육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고도화 개편
감사팀	2	파트장 1명 간부 1명	회계업무 관련 감사업무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하여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감사위원이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가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서 주주총회에서 보수의 한도를 의결하고, 보상위원회에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에 보수를 상이하게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은 모두 복수의 이사회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각 사외이사의 직무와 책임은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사에서 감사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수는 감사위원들의 법적 책임과 직무 수행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할 때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사의 감사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5]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감사위원회 위원	3	206 백만원	69 백만원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보수의 103% ¹⁾

¹⁾ 1인당 평균 보수지급액의 차이는 월급여 이외의 복리후생 등의 지원내역이 개별이사간 상이하기 때문임

라.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의 정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내부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를 준수해 나감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다른 사외이사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의 보수를 큰 차이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외이사들의 각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상호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책임과 노력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수와의 연계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정기적 회의개최 등 내부감사기구 활동내역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회는 2020년 총 4회, 2021년 상반기 2회 개최되었으며, 매 개최 시 감사위원 3인 전원이 참석하여 부의사항(결의사항) 7건, 보고 사항 17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보고, 대외 후원 실적 보고 등이 있었으며, 부의사항으로는 제46기 감사보고, 감사위원장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계약체결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 및 제19조에서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 받아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감사인 선임내역은 없습니다. 삼성회계법인은 당사의 2020년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2021년 3월 11일 전자공시 되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여 늦어도 1일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구두로서 통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진행은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하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동영상 또는 유무선 통신장비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9-2-1]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1 차	2020.02.21	3/3	부의안건	제 46 기 감사보고의 건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가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 개정의 건	가결

회차	개최일자	출석/정원	안건		가결여부
			구분	내용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계약체결의 건	가결
			보고사항	제 46 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대외 후원 실적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개정	
2 차	2020.04.27	3/3	보고사항	'20 년 1 분기 재무제표	보고
				'20 년 1 분기 대외 후원 실적 보고	
3 차	2020.07.31	3/3	보고사항	'20 년 2 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보고
				'20 년 2 분기 대외 후원 실적 보고	
4 차	2020.10.30	3/3	보고사항	'20 년 감사팀 업무감사보고	보고
				'20 년 3 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외부감사인과 협의사항	
				- '20 년 3 분기 외부감사 결과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5 차	2021.02.24	3/3	부의안건	제 47 기 감사보고의 건	가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가결
			보고사항	'21 년 감사팀 업무감사 계획보고	보고
				제 47 기 재무제표 '20 년 4 분기 대외 후원 실적 보고	
6 차	2021.05.04	3/3	부의안건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보고사항	'21.1 분기 재무제표	보고
				'21.1 분기 대외 후원 실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계획	
감사인 선정 준수사항의 확인					

②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구분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비고
	개최일자	2020.02.21	2020.04.27	2020.07.31	2020.10.30	2021.02.24	2021.05.04	
사외	신중계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2020.3임기만료
사외	유재한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2021.3임기만료
사외	남기섭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19.3.선임
사외	최강식	미해당	출석	출석	출석	출석	출석	2021.3.재선임
사외	이기권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2021.3선임

③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신중계	100		100	100
사외	유재한	100	100	100	100

구분	성명	출석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0	2019	2018
사외	박봉흠	100	-	-	100
사외	남기섭	100	100	100	-
사외	최강식	100	100	-	-

※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하였으며, 평균 출석률은 최근 3개년도(2018~202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1년도 참석에 대한 사항은 평균값에 반영하지 않음.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2021년 3월 19일 주주총회에서 유재한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이기권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4장 감사실시에서는 주요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그 절차 및 산출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장 감사결과의 보고에서 감사록의 기록과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감사록의 작성)는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를 의무화 하고 있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가 기재되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한 각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25조(주주총회에의 보고)에서는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나. 내부감사기구가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연4회 공시대상 기간동안 총 6회의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내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이 감사위원회에 100% 출석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성실히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의사록, 감사록으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에게 감사실시 내용을 보고하였고, 사업보고서 제출시 감사의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정책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등을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관리계획, 감사 참여 인원 개인의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2조 제4항은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대면 회의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직전 3개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등의 발생을 그 사유로 하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위원회 선임을 의결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분·반기 검토 및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및 연간 평가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2월 21일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 및 계약체결을 의결하였고,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서 당사의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4일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2020 사업연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필요성, 계약 금액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외부감사인이 수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일부 비감사 업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용역계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은 없었습니다.

[표 10-1-1]

(단위 : 백만원)

용역 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정사유
-	-	-	-

나.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22조에서 관련 정책의 제·개정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4일 감사위원회에서 당사는 2020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 종료 후 감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담당 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등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감사인 선임 준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운영 상에서는 감사인 경리그룹장이 참석하여 외부감사인과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의의 결과 중 회사의 경영 및 재무 보고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경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주요 협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0-2-1]

협의일	주요협의사항
2020.02.21	'19년 외부감사 결과 보고
2020.04.27	'20.1분기 검토 일정 및 주요업무 검토 시 발견된 이슈사항
2020.07.31	'20년 반기 검토 일정 및 주요업무 검토 시 발견된 이슈사항
2020.08.21	감사계획단계의 지배기구 협의 .감사팀의 구성,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책임구분, 감사계획 독립성 등
2020.10.30	'20.3분기 검토 일정 및 주요업무 검토 시 발견된 이슈사항
2021.02.24	기말감사 일정 및 주요 업무내용 기말감사 시 발견된 이슈사항
2021.03.09	감사종결단계의 지배기구 협의 .책임구분, 감사진행상황, 감사결과, 독립성 등
2021.05.04	'20.1분기 검토 일정 및 주요사항 검토 시 발견된 이슈사항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상기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긴밀히 의사소통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는 2020년 3월 20일에 개최되었는데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별도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20일, 연결 재무제표는 2020년 1월 31일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는 2021년 3월 19일에 개최되었고 삼정회계법인에 별도 재무제표는 2021년 1월 21일, 연결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전반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주기적이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부터 외부감사 계획, 외부감사 수행 및 그 평가에 걸친 외부감사의 전 과정에서 외부감사인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 기타 주요사항(이해관계자)

당사는 재무적 역량은 물론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비재무적 역량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 가치의 극대화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성과 편리성이 탁월한 선박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업사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5대 핵심가치와 6대 경영원칙을 제정하여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시 가치판단과 경영행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경영철학]

경영이념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기업사명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성과 편리성이 탁월한 선박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5대 핵심가치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
6대 경영원칙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고객/주주/ 임직원을 존중한다	
	환경/안전/ 건강을 중시한다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세계 초일류 회사를 지향한다	

※ 경영원칙 전문(<http://www.samsungshi.com/Kor/company/intro3.aspx>)

또한,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정부, 임직원, 협력회사, 언론, 지역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정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 관심 토픽, 소통 채널, 활동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상세내용 하기 표 참조).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은 검토를 거쳐 경영활동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가능성 토픽에 대한 추진 방향, 역량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http://www.samsungshi.com/Kor/Sustainability/report.aspx>)

[이해관계자 그룹]

이해관계자	관심 토픽	주요 운영 채널	활동내용
주주 및 투자자	재무실적 경영전략 기술개발	주주총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바탕으로 경영활동 관련 각종 이슈와 뉴스를 정기 보고
고객	고객만족 제품·서비스 품질 고객 커뮤니케이션	고객만족도 조사 VOC 조사 등	정기 미팅을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대응
정부	윤리·준법경영 지배구조 납세·공공정책 참여	국책과제 컨퍼런스 간담회 등	법규를 준수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임직원	인재육성 일과 삶의 균형 복리후생·내부소통 조직문화	사내 게시판 사보 경영현황 설명회 노동자 협의회 등	경영 전략과 추진 방향을 임직원과 공유하며,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진행
협력회사	동반성장 공정거래	협력회사 협의회 상시응답 채널(온·오프라인) 등	협력회사의 의견과 건의사항 경청, 경영활동 반영
언론	경영활동 전반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경영활동 관련 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지역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공헌 환경 보존·보호	사회공헌 활동 자매결연 소셜 미디어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첨부. 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 지표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비고
		○	X		
주 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V	주주총회일 23일 전 소집공고	-
	② 전자투표 실시*	V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실시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V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 개최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V	배당정책 및 계획 별도 미통지	-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V		핵심 Post Succession Plan 운영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V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공시관련 정책 마련 및 운영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V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
	⑧ 집중투표제 채택		V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V	명문화된 정책의 미수립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V		6년 이상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V		2020년 총 2회 교육 제공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V		책임자 임면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	V		감사위원 2인 회계·재무 전문가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V		분기별 1회 이상 대면/서면회의 개최 이행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V		내부규범으로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	-

※ 작성 기준시점은 2021년 5월 31일 임(단, * 항목은 2020년도 정기 주주총회 기준이며,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첨부. 2] 별첨 목록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
4. 경영위원회 운영규정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6.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7. 사외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8. 내부회계관리규정